

2026년 어장정화 · 정비 실시계획

2026. 2.

인천광역시중구
해양수산과

새로운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중구

요 지

□ 추진근거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 등)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어장정화·정비계획의 수립 등)

□ 대상어장 및 기간

- 대상어장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
 - *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마을어업 등
 -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 기 간: 연중 실시, 해상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6.1~11.30.까지 중점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양식어장 정화사업 효과 제고 방안 강구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 2026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26년 5월 ~ 12월
- 사 업 비: 150,000천원(시비 135,000^{90%}, 구비 15,000^{10%})
- 사업대상: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득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득한 사람
- 사업내용: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경운, 폐기물(굴양식장 등) 수거·처리 등
- 사 업 량: 120ha

□ 향후계획

- 2026. 3월: 2026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 2026. 3월 ~ 12월: 어업권자 어장 청소의무 이행 점검(상·하반기별 1회 이상)
- 2026. 6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26. 9월 ~ 12월: 어장정화 용역 추진

2026년 어장정화 · 정비 실시계획

- ❖ 「어장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2026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어장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기반 조성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 「어장관리법」 제14조(어장정화 · 정비실시계획 등)
-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어장정화 · 정비실시계획의 수립 등)

II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실시하되, 해상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6. 1~11.30. 까지 중점 실시
-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접 어장 다수를 어촌계별로 설정, 동일 기간 내 시행 추진(어업권자 사전협의)

☐ 추진방향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과 제고 방안 강구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 · 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적조, 고수온 등 어업재해 발생 해역 우선적 사업 추진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어구 수거 · 처리장소 설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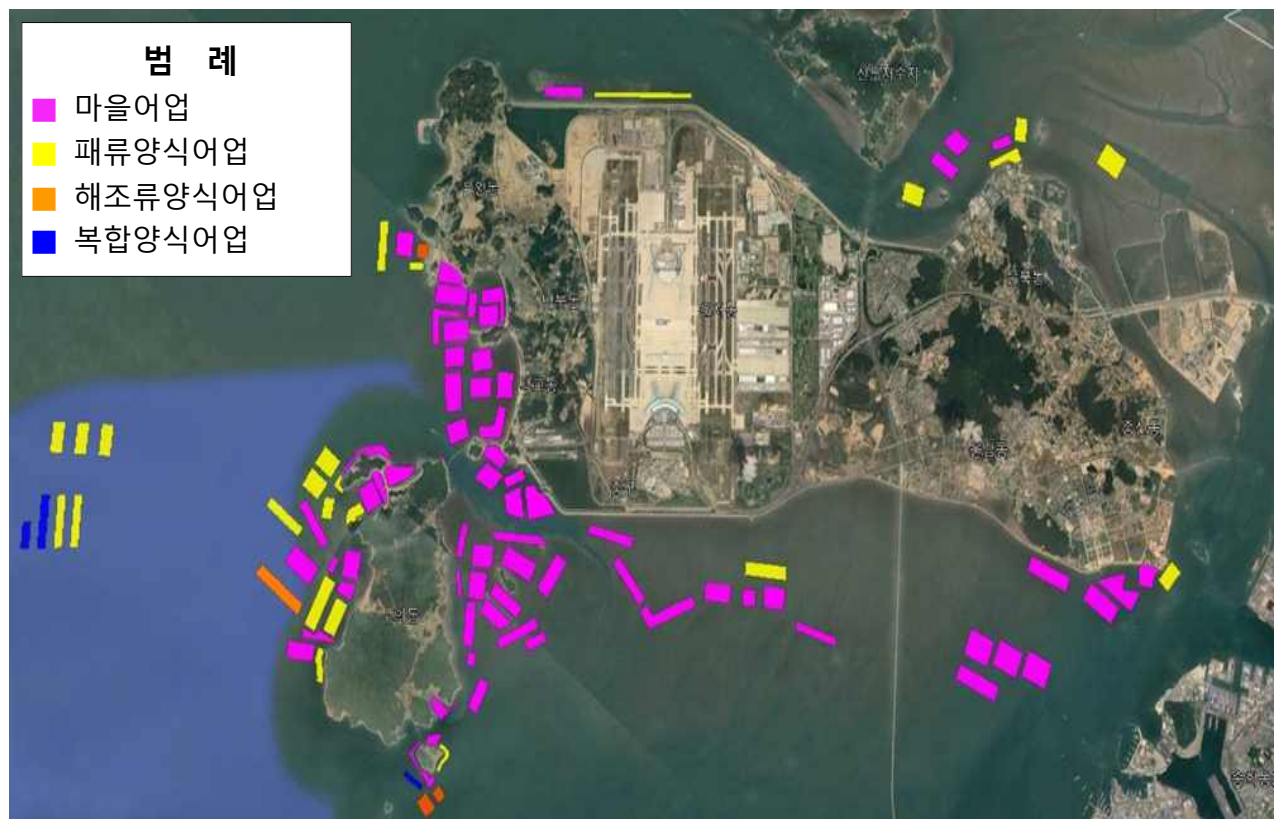
□ 대상어장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수면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
 -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마을어업 등
- 어장과 어장 사이의 수면 등 어장 주변의 공유수면

□ 관내 면허어장 현황

계		패류양식		해조류양식		복합양식		마을어업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99	1,786.5	24	413.5	4	53	3	35	68	1,285

□ 면허어장도



Ⅲ

세부 추진계획

□ 대상어장 선정 우선순위

- 적조 및 빈산소수괴 등 어업재해 발생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어장의 장기이용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해상 유류사고 등으로 저질 및 주변 수역이 오염된 어장
-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되고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육상기인 오염물 유입이 심하여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로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결과 어장환경 평가 기준에 미달(3~4등급)된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 양식어장 정화사업 효과 제고 방안

- 대상지 선정은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
-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실시
- 어장여건과 양식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준설 등의 세부 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

□ 양식어장 재배치 사업

- 어장정화·정비 후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양식산업발전법」, 면허 양식장 이용개발계획 및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처분
- 「수산업법」 제65조에 따라 어업권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어장의 시설물은 어업권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철거의무가 면제된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철거 조치, 어장시설물 재배치 완료 후에는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일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

□ 양식어업권자의 어장 청소의무 이행을 위한 어업인 지도 강화

-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별표1에 따른 면허종류·품종별 어장청소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 종료 전 관련사항을 안내
- 어장청소의무 이행 여부 점검 및 어장관리대장에 이행사항 기록·유지
- 어장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게 6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어업인은 어업활동 중 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구 및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군 수구청장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방치(존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양식어장 불법행위 지속적 단속 실시

- 어장정화정비를 통해 인양된 오폐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무면허 양식시설을 하거나 법정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양식시설물을 설치한 어업권자, 무기산 등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어업권자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관할구역 내 어장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어구 및 양식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유실예방 및 투기금지를 홍보

□ 정화·정비 실시한 수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이용·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철저

-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어업권자의 어장 청소 구역에 대하여 어장 청소가 완료된 시점부터 3개월 전후 어장 내 환경변화를 확인·조치 등 사후관리

□ 어업인이 폐어구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지정·운영

○ 영종 일원

- 구읍·송산 ▶ 구읍어촌계 사무실 내 집하장
- 예단포어촌계 ▶ 예단포항 내 어구적치장
- 운서어촌계 ▶ 삼목항 내 집하장
- 신불어촌계 ▶ 신불선착장 내 집하장

○ 용유 일원 ▶ 선녀바위 인근 해양쓰레기 집하장

○ 무의도 일원 ▶ 무의대교 하부, 하나개해수욕장 쓰레기 집하장

* [붙임 2] 위치도 참조

IV

2026년 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5월 ~ 12월

○ 사업비: 150,000천원(시비 135,000^{90%}, 구비 15,000^{10%})

○ 사업대상: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득하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득한 사람

○ 사업내용: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경운, 폐기물(굴양식장 등) 수거·처리 등

○ 사업량: 120ha

* 사업량은 현장여건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되고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어장의 장기이용으로 생산성이 낮아진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 그동안 추진실적

연도별	사업비(천원)			사업량	사업대상지
	합계	시비	구비		
계	563,898	507,500	56,398		
2020	113,898	102,500	11,398	- 경운 50ha - 폐기물 22.15톤 수거	운북, 신불, 포내, 소무의, 을왕, 큰무리, 송산
2023	150,000	135,000	15,000	- 폐기물 수거 14톤	포내, 큰무리, 을왕
2024	150,000	135,000	15,000	- 굴양식구조물 23.11톤 수거 - 폐지주 5.61톤 수거 - 굴돌이동 76.391㎡	포내, 큰무리, 구읍
2025	150,000	135,000	15,000	- 굴양식구조물 22.53톤 수거 - 폐말뚝 8.39톤 수거 - 해양폐기물 1.71톤 수거 - 경운 25ha	포내, 큰무리, 을왕, 남북, 예단포

V

향후 계획

- 2026. 3월: 2026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 2026. 3월 ~ 12월: 어업권자 어장청소의무 이행 점검(상·하반기별 1회 이상)
- 2026. 6월: 실시설계용역* 발주
 - * 조사 및 설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 선정
- 2026. 9월 ~ 12월: 어장정화 용역* 추진
 - ** 시공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 2026.12월: 용역 완수 및 정산

- 붙임 1.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1부.
2. 위치도(폐어구 수거장소) 1부. 끝.

붙임1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면허의 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제12조제1항 관련)

면허의 종 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	시설물	주기	방법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조간대	김, 매생이 등	대나무, 지주, 밧줄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굴삭기, 관리선 등)
	수하식 (부류망식)	조하대	김 등	뜸, 밧줄, 그물, 닛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뜸, 밧줄, 닛 등	4년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	김, 파래 등	돌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패류 양식업	가두리식	조하대	전복 등	뜸, 밧줄, 가두리, 그물, 닛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펌프식 준설선 (수처리선 포함)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굴, 담치, 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등	뜸, 밧줄, 닛, 채롱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살포식)	조간대	바지락 꼬막 가무락 백합, 동죽 등	모래, 대나무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키조개 새꼬막 등	밧줄, 그물, 닛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	굴 등	돌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	전복 등	돌 등	5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붙임2

위치도(폐어구 수거장소)



- ① 구읍·송산어촌계: 인천 중구 중산동 1957-3
- ② 예단포어촌계: 인천 중구 운북동 1264-1
- ③ 운서어촌계: 인천 중구 운서동 2828-3
- ④ 신불어촌계: 인천 중구 운서동 2854-2
- ⑤ 용유일원: 인천 중구 을왕동 983 인근 공유수면
- ⑥ 무의일원: 인천 중구 무의동 산4-1 인근 공유수면, 무의동 산189. 끝.